

# 장애인의 탈시설화

학과: 사회복지 학번 202211422 이름: 남민혁

## 1. 서론 (문제상황)

인간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 자체로 존엄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의 욕심만을 중요시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 하기도 한다. 또한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도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종류로는 지체 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차별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있다. 장애인들은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뜻대로 펼칠 자유가 있지만, 시설이나 실내에서 답답하게 사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약하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그들을 감금시키고 폭행하는 사례들이 자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 2. 본론 2.1 소제목 2.2 소제목

우리는 장애인들이 폭행당하고 심하면 사망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자주 보곤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학대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거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 2014년 신안 염전노예사건의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이 드러났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장애인을 장시간 동안 노예처럼 부려 먹으며 불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폭행과 학대 문제점에 대해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범죄들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장애인을 이용하는 범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이 가진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을 (성)폭행 및 학대하기도 하고,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은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를 치는 사건까지. 이런 이러한 사건들을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간과 제도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 지금도 이들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공통점은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꾸준히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선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 장애계에서는 이러한 시설 내 장애인 폭행과 학대 사건보다 '탈시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흐름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법령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사람들이, 혹은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이 인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와 폭력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장애 관련 종사자들은 심층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 했거나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냥 묻히게 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했거나 목격했을 때는 바로 신고하는 정신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150건으로 전체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의 14.9%를 차지한다. 거주 시설의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의 1.1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주 시설에서의 학대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거주 시설 장애인의 80.0%가 지적·자폐성 장애인이고, 장애 정도로 보면 98.3%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상당수의 장애인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더 많은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하기 어렵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알리기 어려웠을 확률이 높다. 학대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누가 결정했는지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했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9%이다. 이렇게 입소한 거주 시설 장애인의 19.0%는 20년 이상, 55.1%는 10년 이상을 거주 시설에서 살았고, 84.5%의 장애인이 거주 시설 입소 후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이를 봤을 때 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지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며 학대까지 당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의 낮은 인프라나, 자립 지원체계의 미비를 이유로 탈시설을 반대하지만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은 피력되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탈시설은 단순히 거주 시설을 없애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탈시설은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 현존하는 시설을 폐쇄해가고,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탈시설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 3. 반론 및 재반론 3.1 반론 3.2 재반론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신정화씨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탈시설 반대를 외쳤다. 신씨의 아이는 손톱과 발톱을 물어뜯고 강박증세가 심하다고 했고 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탈시설 로드맵을 보았는데 잘못되었다며 탈시설을 하든지 시설에 남든지 부모가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탈시설 로드맵의 내용은 이러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물론 신정화씨의 이야

기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부모의 선택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를 의사소통 가능한 6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응답이 33%가 나왔다. 이 33%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꿈을 펼치도록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은 복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들을 잘 시행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는 기사가 자주 뜨는 것은 정책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정책의 효과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부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 4. 결론

시설에서 나와 고립이 아닌 독립성이 확보되면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 비용 절감 등 여러 이점을 가져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셜하우징(사회주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셜하우징이란 단순히 한 집에서 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를 넘어 조합을 결성해 함께 짓는 공동주택,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셜하우징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공임대를 포괄하기도 하고 공익적 민간주체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소셜하우징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취약계층 등의 주택 수요에 부응해 배분, 지역재생\*사회통합 등 사회적 목적 추구, 공급 주체는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회적 경제 주체), 공공의 지원(금융, 재정, 토지)을 받아 공급이다. 탈시설 이후, 고립이 아닌 독립적 삶,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더불어 사는 삶의 실현이 가능한 소셜하우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기존 장애인 시설을 소셜하우징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탈시설은 법, 정책, 관행 모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시설화가 지속되는 근본원인으로 시설 대안 부재, 지역사회 내 지원 개발 부족, 장애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4)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 정책, 관행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 설립을 중단하는 법률 제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수립 등이 포함된다. 탈시설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 탈시설의 때가 무르익으면, 자원이 충분하면,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면 등의 조건부적인 기대 아래에서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익숙해진 시설화 체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 국가는 더 이상 자원 부족을 이유로 뒷걸음치거나, 장애인이 시설을 선호한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탈시설의 첫걸음이 될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탈시설은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탈시설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애인 가족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족에게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를 버틸 수 없는 가족은 시설밖에 선택지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가족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협약이 예정하는 탈시설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단호하게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이 가족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의 동참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다. 국가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탈시설이다.

##### 5. 참고문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03&wr\\_id=10116](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03&wr_id=10116)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11347350283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25044>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03](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03)

탈시설 이후의 주거대안

<http://www.welvoter.co.kr/36665>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6>)

